

# 행 정 자 치 부

## 훈계 · 시정 요구

제 목 토석채취허가 취소지 산지복구준공 및 사후관리 부적정

기 관 명 강원도

관 계 기 관 고성군

관 련 자 고성군 ○○과

지방○○○○ ○○○

내 용

지방○○○○ ○○○는 2014. 4.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고성군 ○○면 ○○리 산00번지(27,533m<sup>2</sup>) ○○○외 2인이 신청한 토석채취허가 및 취소지 산지복구 준공처리 건 관련 업무담당이다.

고성군(○○과)에서는 수 허가자 ○○○외 3인이 신청한 고성군 ○○면 ○○리 산00번지 토석채취허가 취소지에 대한 산지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를 접수받아 2015. 3. 16. 복구설계승인을 하였고,

2015. 10. 26. 복구준공검사 신청서가 제출됨에 따라 복구설계서에 따라 적정하게 복구되었다고 판단하여 2015. 11. 24. 토석채취허가지 복구준공검사 처리 통보를 하였으나, 산지복구 현장 확인결과, 복구지 법면이 상당부분 유실되어 하단부 농경지로 유출되는 등 복구준공 및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산지관리법」 제39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르면, 토석 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토석의 채취를 완료하였거나 토석채취기간 등이 만료된 경우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고,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는 산지복구기간 등이 포함된 산지복구설계서를 작성·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복구설계서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복구설계서가 승인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제44조에 따르면, 복구 의무자가 복구를 완료하였을 경우 복구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복구준공검사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한 복구설계서에 따라 적합하게 복구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복구설계서에 계상된 복구공사비 총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복구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5년간 예치하여야 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기간 중에 복구공사의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한 자에게 일정 기간 이내에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고성군(○○과)에서는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 따라 토사유출 또는 붕괴의 우려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 또는 다른 배수시설 등으로 배수되도록 배수시설을 설치하도록 승인하고,

복구설계서에 따라 적합하게 복구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복구준공된 산지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기간 동안 하자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한 자에게 하자의 보수를 하게 하거나 대행자를 지정하여 하자를 보수하게 하고 그 비용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충당하여야 했다.

그런데 고성군(○○과)는 2014. 12. 24. 토석채취허가 취소되어 허가기간이 만료된 고성군 ○○면 ○○리 산00번지 복구면적 6,575㎡에 대한 복구설계승인 신청에 대하여 2015. 3. 16. 복구설계승인 시 복구승인기준에 따라 배수시설의 필요성을 충분하게 검토하여 반영하였더라면 집중호우에 따른 토사유출을 최소화 할 수 있었음에도 업무담당(○○○)이 검토를 소홀히 하여 직접 복구 설계를 승인 한 사실이 있고,

또한 아래 [표 1]과 같이 승인받은 복구설계서에 따라 적합하게 복구되었는지를 검사하여 복구준공처리를 하여야 했으나, 2016 정부합동감사 사전조사 시 산지복구 현장 확인결과, 복구설계서상 산마루 측구 설치 계획이 없었으며, 때수로(L=223m)는 설계와 달리 마대수로로 변경되어 설치되어 있었으며, 전석쌓기(H=1.0, L57m)는 돌놓기 형태로 시공되어 본래의 목적달성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임에도 업무담당(○○○)이 부적정하게 복구준공처리 하였고,

복구준공 된 산지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던 지역으로 행정청에서는 복구준공 이후에도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기간 동안 하자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한 자에게 하자의 보수를 하게 하거나 대행자를 지정하여 하자를 보수하게 하여야 함에도,

산마루 측구 등 배수로를 적재 적소에 반영하지 않아 배수불량으로 복구지 법면이 상당부분 유실되어 하단부 농경지로 유출되었고, 씨뿌리기 활착 불량, 용기묘 고사 등의 복구불량 상태로 하자가 발생되어 감사일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는데도 별다른 행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1] 산지복구설계 승인 현황

| 위 치                            | 복구자            | 복구대상       |           |                      |                                                                                                                                      | 하자보수보증금<br>예치현황 | 비고 |
|--------------------------------|----------------|------------|-----------|----------------------|--------------------------------------------------------------------------------------------------------------------------------------|-----------------|----|
|                                |                | 면 적        | 복구비       | 기간                   | 주요공종                                                                                                                                 |                 |    |
| 강원도 고성군<br>○○면<br>○○리<br>산00번지 | ○○○<br>외<br>3인 | 6,575<br>㎡ | 143,187천원 | '15.5.18<br>~ 11.13. | · 전석쌓기(H=1.0, L67m)<br>· 때수로(B=0.6, L223m)<br>· 사각맨홀(700*700, 5개소)<br>· 녹화마대쌓기(2단, L76m)<br>· 씨뿌리기(4,865m)<br>· 나무식재(강송 2-0, 2,162본) | 2,570천원         |    |

조치할 사항            고성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① 앞으로 토석채취허가지 준공 시에는 설계서 및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여 준공조치 하시고, 호우로 인하여 붕괴된 경사면 토사유출 부분에 대하여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보강공사 등 시정조치 하시기 바라며,

② 아울러, 농경지 매몰 피해지역에 대하여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 피해복구 협의 등의 조치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